

12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

장애인복지과장 : 임지훈 ☎ 2133-7440 장애인권익보장팀장 : 정연순 ☎ 7360 담당 : 원경희 ☎ 7365

□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 등)
 - '23년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 이전 계획(장애인복지정책과-18172, '23.12.4)
- 사업명 :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
- 사업내용 :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일시보호, 교육지원, 상담 및 치료 지원 등
 - 강북구(남아), 마포구(여아) 쉼터 통합 이전(마포구)을 통해 입소아동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시설 운영(시설장 겸임)의 효율화 추진

□ 전용금액 및 사유

- 전용금액 : 총 76,948천원
- 전용사유 : 학대 피해장애아동쉼터 통합이전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 총당
 - 건축공사 비용 상승으로 설계용역 공사비 산출내역에 따라 부족분(70,488천원) 발생
 - 실시설계에 따른 완성도 높은 공사 추진을 위해서 감리용역비(6,460천원) 추가
- 전용내역

(단위 : 천원)

		예산과목			예산액	전용액		변경후 예산액
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장애인자립 생활기반 조성	장애인자립 생활지원	학대피해장애 아동 쉼터 운영	시설비 및 부대비 (401)	계	401,980	76,948	-	478,928
				(401-01) 시설비	401,980	70,488	-	472,468
				(401-02) 감리비	-	6,460	-	6,460
		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	민간이전 (307)	계	3,455,123	-	△76,948	3,378,175
				(307-11) 사회복지 사업보조	3,455,123	-	△76,948	3,378,175

□ 향후일정

- 공사비(시설비, 감리비 등) 집행 : ~ '25. 1월